

<제3안>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통보

1. 종건토인 58700-1695호 ('95. 9. 15)와 관련임.

2. 도시계획사업 (도로) '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(4공구)'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: 도로계획과장, 종합건설본부장 (토목1부장), 노원구청장 (건설관리과장)

<제4안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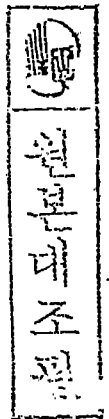
수신 : 공보 1 담당관

제목 : 시보개제의뢰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'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(4공구)'의 고시문 (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 - 호)을 별첨과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용지조서 각2부. 끝.

건설행정과장



고 시 (안)

실시	1995.10.6	제 281 호
담당자	발계재장	부담담관
	이영	김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277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349호('94. 11. 5)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된 '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(4공구)'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·노원구·건설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성북구 하월곡동 67-119 - 노원구 공릉동 284-2간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(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(2) 사업의 명칭 :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(4공구)

다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(변경없음) : 도로 폭 = 19~26M, 연장 = 6,095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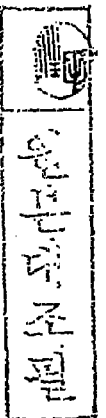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(변경없음) :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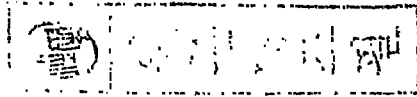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(변경없음) : '94. 11. 5 - '98. 12. 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·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: 별항

사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·성명 : 별항

아.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



토 지 조 서

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
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7

사업의 종류 : 북부도시고속도건설공사 4공구

(변경전)

(변경후)

연 번	소재지 지번	지 목	편입 면적 (㎡)	실용 상 황	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소재지 지번	지 목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
				지 목	면 적 (㎡)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 리 관 계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 리 관 계	
											노원구 월계동 43-3	대	149	유병규	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- 49				